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82
----------	------

제출일자 : 2016. 8.

제 출 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군민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형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개정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000cc미만으로 개정(안 제1조)

나.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자 및 선정방법 범위 확대

-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대구시” 에서 “달성군” 을 추가, 현행 “법인 또는 개인” 에서 “단체” 를 추가하고, 위탁자 선정방법 및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일반경쟁” 및 “계약금액” 으로 개정하여 공정한 경쟁과 입찰 참여기회를 제공(안 제1조)

다.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증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 법률의 위임 없이 부담금에 대한 증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 삭제(안 제2조)

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

- 법률의 위임 없이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3조)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반영

- 각종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 반영(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6. 7. 29. ~ 8. 1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별표 1] 중 “경형자동차(배기량800cc미만)”을 “경형자동차(배기량1,000cc미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대구광역시가 설립한”을 “대구광역시 및 달성군이 설립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을 “제1항제2호의 경우”로 하고, “수의계약”을 “일반경쟁”으로 하며,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노상주차장) 또는 군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대부료(노외주차장) 상당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북리 1-104번지”를 “논공로 697-9”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설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이용권을 부여한다.

제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장애인으로 한다.”를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다.”

제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비자보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소
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로 하고, 제4조제1호 중 “「소비자
보호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을 “「소비자기본법」 제6조제3
호에 따른”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
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다.”

제9조제2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를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
자원에” 로 한다.

제7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p> <p>가. ~ 나. (생략)</p> <p>다. <u>경형자동차(배기량800cc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u></p> <p>라. (생략)</p> <p>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p> <p>① (생략)</p> <p>1. <u>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u></p> <p>2. <u>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u></p> <p>3. <u>군수가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u></p> <p>② (생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선정방법</th> <th style="width: 20%;">납부하여야 할금액</th> <th style="width: 50%;">납부방법</th> </tr> </thead> <tbody> <tr> <td>1. 제1항제1호의 경우</td> <td>군수가 정하는 방법</td> <td>군수가 정하는 금액</td> <td>군수가 정하는 방법</td> </tr> <tr> <td>2.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의계약</td> <td>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노상주차장) 또는 군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료(노외주차장) 상당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약금액 전액 선납</td> </tr> <tr> <td>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경쟁</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약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약금액 전액 선납</td> </tr> </tbody> </table>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금액	납부방법	1.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2.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노상주차장) 또는 군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료(노외주차장) 상당액	계약금액 전액 선납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일반경쟁	계약금액	계약금액 전액 선납	<p>【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u>경형자동차(배기량1,000cc미만)-</u> -----.</p> <p>라.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1. <u>대구광역시 및 달성군이 설립한 -----</u> -----</p> <p>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②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선정방법</th> <th style="width: 20%;">납부하여야 할금액</th> <th style="width: 50%;">납부방법</th> </tr> </thead> <tbody> <tr> <td>1. 제1항제1호의 경우</td> <td>군수가 정하는 방법</td> <td>군수가 정하는 금액</td> <td>군수가 정하는 방법</td> </tr> <tr> <td>2. 제1항제2호의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경쟁</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약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약금액 전액 선납</td> </tr> <tr> <td><삭 제></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금액	납부방법	1.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2. 제1항제2호의 경우	일반경쟁	계약금액	계약금액 전액 선납	<삭 제>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금액	납부방법																														
1.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2.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노상주차장) 또는 군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료(노외주차장) 상당액	계약금액 전액 선납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일반경쟁	계약금액	계약금액 전액 선납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금액	납부방법																														
1.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2. 제1항제2호의 경우	일반경쟁	계약금액	계약금액 전액 선납																														
<삭 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u>제25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u></p> <p><u>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u></p>	<p><u>제25조(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u></p>

□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복리 1-10 4번지에 위치한다.</u></p>	<p><u>제2조(명칭 및 위치) ----- ----- ----- 논공로 697-9 -----.</u></p>
<p><u>제4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u></p> <p><u>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감염병질환자</u> <u>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u> <u>3. 기타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 	<p><u>제4조(시설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이용권을 부여한다.</u></p>

□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자의 하자로 인한 재배농업인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u>소비자보호법</u>」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피해처리센터(이하 처리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소비자기본법</u>」 제16조제1항에 따라 ----- ----- .</p>
<p>제4조(처리센터의 업무) 처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1. <u>소비자보호법</u>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배농업인 보호시책 수립 및 실시 2. ~ 6. (생략)</p>	<p>제4조(처리센터의 업무) ----- ----- . 1. 「<u>소비자기본법</u>」 제6조제3호에 따른 ----- 2. ~ 6. (현행과 같음)</p>
<p>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당연직 위원과 종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대표 및 종자업자 대표중에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후단신설> 1. ~ 6. (생략) ④ (생략)</p>	<p>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u>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u>」 제8조에 따른다. 1.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 종자피해처리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생략)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u>소비자보호법</u>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한국소비자보호원</u>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고자 할 때</p>	<p>제9조(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 ----- ----- . 1. (현행과 같음) 2. ----- 「<u>소비자기본법</u>」 제55조제2항에 따라 <u>한국소비자원에</u> ----- -----</p>

상위 및 관계법령 안 제1조

□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7.> [전문개정 2011.12.15.]

[별표 1] <개정 2014.8.18.>

자동차의 종류 (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승 용 자동차	<u>배기량이 1000cc 미만</u> 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미만 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 합 자동차	<u>배기량이 1000cc 미만</u> 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이거나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 물 자동차	<u>배기량이 1000cc 미만</u> 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 수 자동차	<u>배기량이 1,000cc 미만</u> 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상위 및 관계법령	안 제2조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위 및 관계법령	안 제3조
------------------	--------------

□ 「도로명 주소법」 제20조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 변경 등) ① 공공기관장은 비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민은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때에는 전산화가 된 경우에는 전산화에 의한 방법으로 일괄수정하고, 전산화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소 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 변경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장은 이미 공표한 각종 구역의 표시를 제19조제2항의 기한까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번호로 변경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일괄수정되지 아니하는 주소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등의 확인을 거쳐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5조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1.26.>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2.1.26.]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8.4.]

상위 및 관계법령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소비자기본법」 부칙 제13조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